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19. 8. 23. (금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최경분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19년 8월 13일
- 회부일자: 2019년 8월 14일

## 3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「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위임 사항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## 4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및 관련 조항 정비
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 반영
    -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방법(안 제8조)
    -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경기준 신설(안 제34조)
  -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대상 확대(안 제32조 및 안 제65조)
  -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토석채취에 대한 가격결정 방법 변경(안 제32조)
  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(행정안전부 고시) 변경에 따른 수익매각 기준 정비(안 제41조)

-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 정비
  - 약칭 사용 위치 변경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  -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 삭제(안 제5조의2)
  -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 변경
    -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사항에 용도폐지(변경) 삭제(안 제4조·6조)
  -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을 사용허가일로 개선(안 제18조)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상위법령과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등 정부 지침에 맞추어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, 그 밖에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
-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1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에서 ‘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’을 삭제하였고, 안 제5조의2에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조의2와 같이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였음
- 안 제32조와 제65조에서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의 취지를 반영하여, 기존 ‘감정평가법인’에게만 감정을 의뢰하도록 하였던 것을 ‘감정평가법인’과 ‘감정평가사’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안 제34조에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받은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기준을 새로 정하였음
- 그 밖에 안 제5조, 제6조(제1항), 제8조, 제18조, 제32조, 제34조, 제41조 역시 상위법령이나 정부 지침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